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6. 7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장



-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8조제4항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손O철	98. 7. 14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부당 이득금 반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환수처분	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지급에 따라 기 지급된 취업성공수당 환수	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액 (1,2회차) 총 1,500,000원 반환	폐문부재	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05-17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4. 6. 7. ~ 2024. 6. 24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고유민(☎ 055-760-670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